

환경부 보도자료

2004년 5월 3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

□ 2004. 4. 배포

□ 총 13쪽

상하수도국	임채환 과 장	전화	02-2110-6888
생활하수과	홍동곤 사무관	(메일)	hongdg@me.go.kr

하수와 오수·분뇨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본격화

- ◇ 하수도법과 오분법, 관련 예산, 자치단체의 조직 등 통합 방안 마련
- ◇ 금년중 '제도개선포럼'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통합법률안 제시, 2005년도에 제정·시행

□ 환경부는 '04. 3월 하수와 오수·분뇨의 통합관리를 위해 하수도과와 생활오수과를 통합하여 생활하수과를 설치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법령과 예산, 조직통합을 전제로 금년 4월부터 '제도개선포럼'을 구성·운영하여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통합법률안을 만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

-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법 통합외에도 자치단체의 하수도 담당과(건설과 또는 도시과)와 오수담당과(환경과) 통합, 하수도 위주의 예산을 균형 예산으로 변경하는 방안등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
- 이는 그동안 수세화율 상승 및 하수도보급률이 증가하면서 하수와 오수·분뇨의 분리 처리 필요성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제도·조직·예산 등은 종전체계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른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

※ 수 세 화 율 : 84%('97년)→92%('02년)

하수도보급률 : 60.9%('97년)→75.8%('02년)

□ 이러한 통합법령 제정은 일부 신도시지역을 제외하고 가정 또는 개별건축물에서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을 통해 오수·분뇨를 처리하는 현행 오수·분뇨관리체계에 일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

- 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 전국적으로 270만개에 이르는 정화조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정화조로 유입되던 하수는 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.

※ 정화조가 설치된 합류관거를 정화조가 필요 없는 분류관거로 교체하거나, 관거가 미설치된 지역에 정화조 설치 없이 분류관거를 설치

-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개별 건축물마다 설치하는 14만개의 오수처리시설은 마을단위별로 공동 설치하거나 운영방식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·운영하여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준수도 유도하는 공공관리 성격의 관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.

□ 이러한 하수·분뇨의 통합처리에 따라 정화조·오수처리시설 관련업종 또한 단순화하거나 통합시켜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 육성하고, 불량품 제조·유통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정화조의 설치기준과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.

※ 정화조 관련업체('02년) : 총 4,066개소

· 정화조제조업 33개소, 오수처리시설제조업 49개소, 설계·시공업 1,629개소, 수집·운반업 773개소, 청소업 1,062개소, 관리업 520개소

□ 이러한 제도개선방안과 통합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·운영하는 '제도개선포럼'의 총괄책임자는 KEI정책연구부장이 맡는다. 이 포럼에는 KEI, 상하수도협회·학회, 업체,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실무 전문가들로 오수·분뇨, 하수도, 법령통합 등 3개 분과를 두고, 수시로 Brain Storming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. 이외에도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연찬회, 공청회를 개최하여 올 11월쯤 최종 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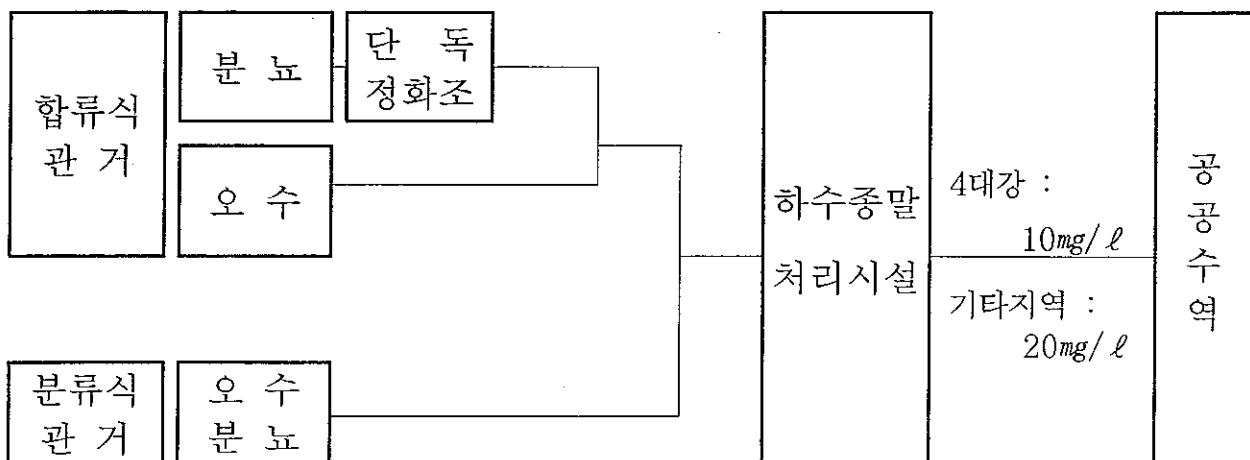
〈참고자료〉

- 붙임 1. 하수 및 오수·분뇨 처리체계도
2. 하수 및 오수·분뇨 통합 추진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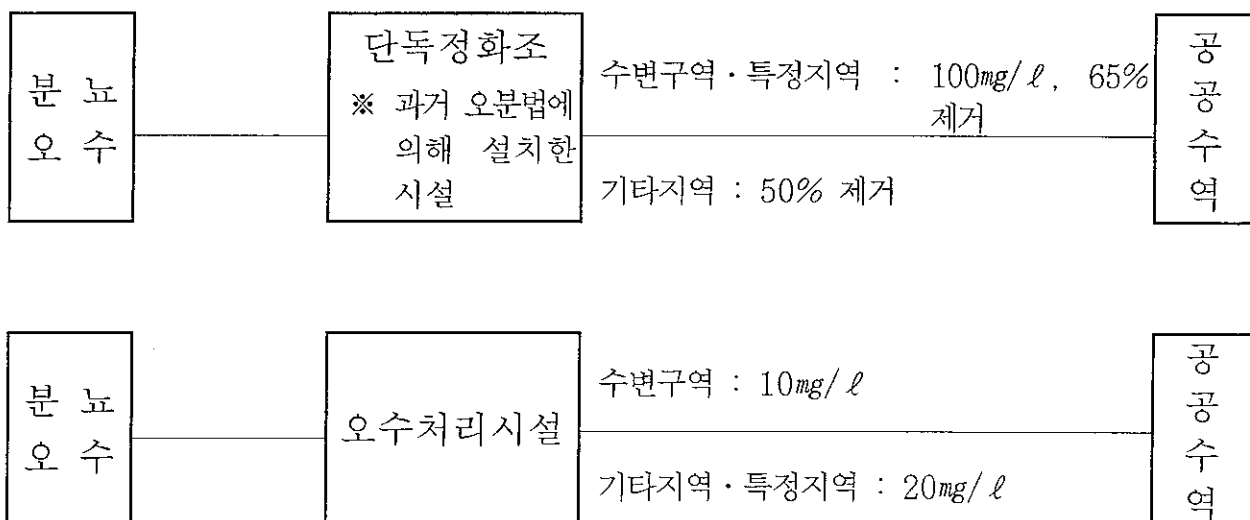
<붙임 1>

하수 및 오수·분뇨 처리체계도

하수처리구역 內



하수처리구역 外



<붙임 2>

하수 및 오수·분뇨 통합 추진계획

2004. 4

환 경 부

순 서

I. 문제 제기	19
II. 현행 체계의 문제점	20
III. 주요 개선방향	22
IV. 제도개선포럼 구성 · 운영	24
V. 향후 추진일정	26

I. 문제 제기

□ 하수와 오수·분뇨의 분리 배경

- 오분법 제정 이전(~'91.3), 오수·분뇨는 환경부(수질환경보전법, 폐기물관리법), 하수도는 건설교통부(하수도법)에서 담당
- 오분법 제정 당시 오수·분뇨 관련조항을 오분법으로 통합했으나, 하수와의 연계성 검토는 부족

□ 통합을 위한 기본인식

- 하수도시설과 오수·분뇨시설은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된 환경시설이므로
- 현행 제도·조직·예산체계를 최종 목적인 방류수역의 수질 개선에 맞춰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

□ 하수와 오수·분뇨의 통합 필요성

- 수세화율 상승 및 하수도보급률 증가에 따라 하수와 오수·분뇨의 분리처리 필요성은 감소

※ 수세화율 : 84%('97년) → 92%('02년)

하수도보급률 : 60.9%('97년) → 75.8%('02년)

- 반면, 하수 및 오수·분뇨 관리를 위한 제도·조직·예산체계는 종전 체계를 그대로 유지
- 종전 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법 및 오분법 통합을 전제로 하여 중복 및 유사업무를 과감히 통·폐합하고 하수도시설과 오수·분뇨시설의 연계방안 추진이 필요

※ 하수와 오수·분뇨의 통합관리를 위해 하수도과와 생활오수과 통합 ('04.3.22, 환경부직제 개정)

II. 현행 체계의 문제점

□ 행정기관의 조직·인력·예산 분리

- 자치단체의 경우 하수도는 건설과 또는 도시과, 오수·분뇨는 환경과에서 주로 담당
- 관리부서 이원화에 따라 하수도 위주로 예산을 편성, 오수·분뇨 관련예산은 미미

※ 하수도('04년 국고) : 1조 4,024억원, 오수·분뇨('04년 국고) : 399억원

□ 기본계획 분리 수립

- 자치단체는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, 오분법에 따라 분뇨및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을 수립
 - 하수와 오수·분뇨를 통합 처리할 경우에도 동일한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·운영
-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개별법에 의해 별도의 인·허가를 득하도록 규정

□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

-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은 시설 규모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 의해 동일한 수준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설정됨

※ 방류수 수질기준(BOD 기준)

- 하수종말처리시설 : 10mg/ℓ (4대강), 20mg/ℓ (4대강 외)
- 오수처리시설 : 10mg/ℓ (수변구역), 20mg/ℓ (수변구역 외)
- 팔당호 등 일부유역의 경우 현행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기준으로는 수질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음

□ 개인 건축물에 대한 형평성

- 개인 건축물에 대해 분류식 처리구역은 시설설치 면제, 합류식 처리구역은 정화조, 처리구역 외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규정
- 하수도요금만 납부하는 시설설치 면제자에 비해 정화조·오수처리 시설 설치자는 운영·관리비용을 과다 부담

※ 오수처리시설 운영·관리비 : 7톤/일 시설 규모 월 6만원

□ 오수·분뇨 관련영업 및 사업자의 관리

- 오분법에 의해 오수·분뇨 관련업종이 세분화됨에 따라 영세화, 전문성 부족, 업무영역 중복, 과열 과당경쟁 문제가 발생

※ 오수·분뇨영업('02년) : 총 4,066개소

· 정화조제조업 33개소, 오수처리시설제조업 49개소, 설계·시공업 1,629개소, 수집·운반업 773개소, 청소업 1,062개소, 관리업 520개소

- 하수도 운영요원은 하수도법, 오수·분뇨 관리자는 오분법에 따라 교육기관, 교육기간, 교육내용 등을 상이하게 운영

□ 처리시설 및 처리구역 분류

- 처리시설은 정화조·오수처리시설(50톤/일 미만), 마을하수도 (50~500톤/일), 하수종말처리시설(500톤/일 이상)로 구분하여 개별법에 의해 독자적으로 관리

※ 처리시설('02년) : 총 2,866개소

· 정화조 2,727천개, 오수처리시설 137천개, 마을하수도 1,516개, 하수종말처리시설 207개

- 처리구역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과 하수처리구역 이외지역 중 오분법에 의한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, 연계 지정·관리체계가 미흡

Ⅲ. 주요 개선방향

□ 행정기관의 조직·인력·예산 통합

- 환경부의 직제 개정('04.3.22) 후속조치로서 중앙부처의 관련법령·예산 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
- 환경부 통합을 모델로 하여 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

□ 통합기본계획 수립·운영

- 하수 및 오수·분뇨의 통합기본계획 수립방안 검토
 - 기본방향, 기본계획내용, 수립주기, 수립절차 등 제시
- 관련시설 설치·운영에 대한 마스터 플랜으로 활용

□ 방류수 수질기준 재조정

-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시설용량 차이를 고려하여 차별화방안 제시
- 방류수역별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기준의 재조정 검토

□ 개인 건축물에 대한 형평성 제고

- 인구 밀집지역에 산재한 개별시설을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편입시키는 방안 제시
- 개별시설 설치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방안으로 오수처리시설 유지·관리비용 국고지원 검토

□ 오수·분뇨 관련영업 및 사업자의 관리

- 정화조제조업 등 오수·분뇨 업종에 대한 통합 또는 단순화방안 제시
 -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구조·규격·성능·재질기준 조정방안 검토
 - 업종폐지·통합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검토
- 하수도 및 오수·분뇨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실시기관, 교육 대상자, 교육내용 등 통합방안 제시

□ 처리시설 및 처리구역 통합방안

- 관계부처 협의 및 외국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개별시설과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연계 운영방안 제시
 - 현행 개별시설 설치·운영을 마을단위별 공동 설치·운영방식으로 전환 검토
 - 공동 설치·운영시 관리책임을 자치단체에 부여하거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업체 위탁관리방안 검토
- 하수처리구역과 오수처리대책지역의 연계 지정·관리방안 제시

□ 하수 및 오수·분뇨 제도개선 기본방향

- 하수 및 오수에 대한 용어 통일
 - ※ 하수(하수도법 제2조) : 오수 + 우수
- 국토계획·이용법 등 관계법령 개정 필요성 검토
- 축산폐수 제도개선 기본방향 제시
- 기타 하수 및 오수·분뇨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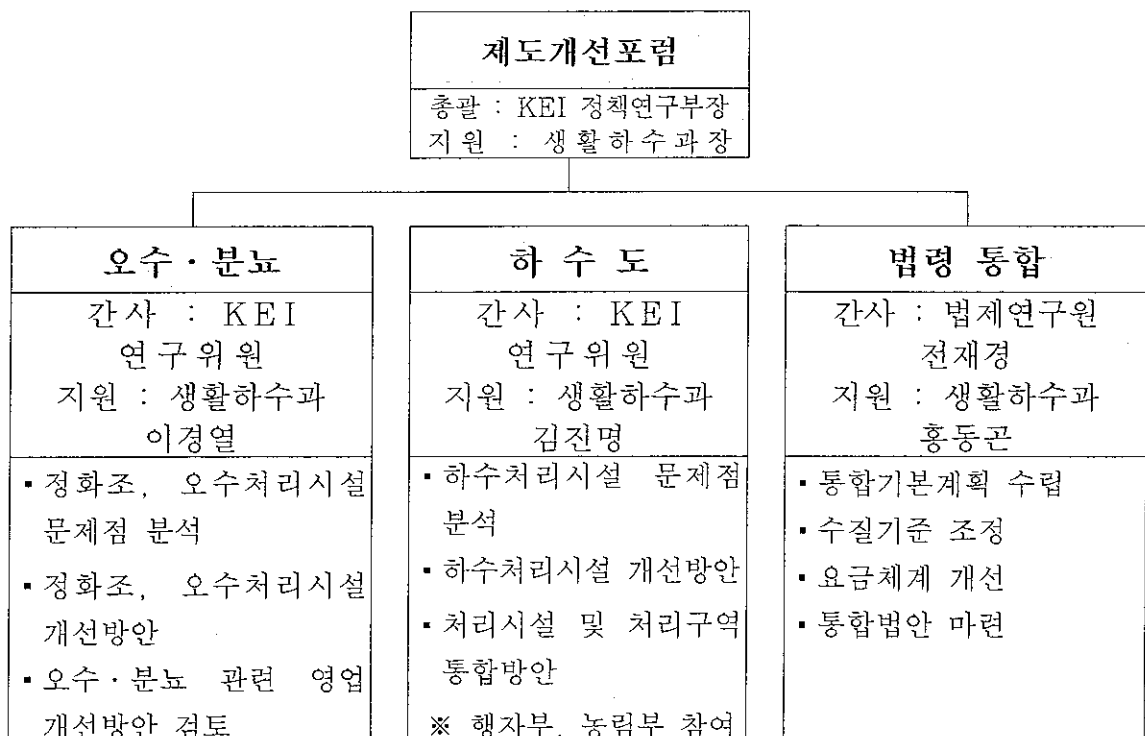
IV. 제도개선포럼 구성·운영

□ 기본방향

- 학계·업계·연구계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공동 참여하는 **민·관연구포럼**을 구성하여 **장·단기 개선방안**을 도출하되, 개선방안은 통합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**구체적인 법률안 제시**
- 단기간에 내실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**정례회의**를 개최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**연찬회**, **공청회**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

□ 포럼 구성

- KEI, 상하수도협회, 상하수도학회, 영업업체, 환경부,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실무전문가로 **분과별 연구팀 구성**(분과별 7명 내외)
- 연구팀은 **오수·분뇨**, **하수도**, **법령통합** 등 **3개팀**으로 구성하되 원활한 팀운영을 위해 **팀별 전문가 1명이 간사업무 수행**



□ 운영계획

- 운영기간 : '04.4~11(7월)
- 운영방식
 - 분과별 연구팀은 KEI 전문가를 중심으로 수시로 Brain Storming 회의를 개최하되 월 1회 이상 정례회의 개최(생활하수 과장 참석)
 - 공무원, 영업업체 등 현장 실무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5월중 워크숍 개최
 - 개선방안 시안이 도출되는 9월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 수렴
 -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 현장 점검 및 광범위한 자료 조사 실시

□ 예산지원

- 제도 개선안 도출을 위해 팀원, 발표자, 토론자 등에게 소정의 연구비·원고료 및 회의수당 등을 지급
 - 소요예산액 : 30백만원(회의 부대경비, 원고료 등 포함)
 - 예산과목 : 1401-213-206(환경정책연구사업비)
- ※ 사업비 소요내역 : 별첨

□ 운영성과물

- 연구팀별 논의결과와 제도개선포럼 결과를 토대로 KEI에서 최종 용역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
- 용역보고서에 통합법령 제정초안을 함께 작성

V. 향후 추진일정

□ 제도개선포럼 구성·운영 : '04.4~11(7월)

- 연구팀 구성·운영을 위해 KEI와 용역계약 : '04.4
- 연구팀회의 및 총괄회의 운영 : '04.5~11

월	5월			6월			7월			8월			9월			10월			11월		
	주제별 토의												종합토의 및 수정								
	상	중	하	상	중	하	상	중	하	상	중	하	상	중	하	상	중	하	상	중	하
내 용	연구 팀 회의 1		워크 샵		연구 팀 회의 2		연구 팀 회의 3		중 간 보 고		연구 팀 회의 4		제 도 개 선 포 럼 1		공 청 취		제 도 개 선 포 럼 2		제 도 개 선 포 럼 3		개 선 계 획 수 립

□ 통합법령 제정 : '04.11~'05.6(8월)

- 통합법안 마련 : '04.11
-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: '04.11~12
- 규제개혁위 및 법제처 심사 : '05.1~3
- 국무회의 및 국회 심의 : '05.4~6

□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개선 추진 : '05.7~12(6월)

- 통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마련 : '05.7
- 통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추진 : '05.7~12
- 조직·인원·예산 제도개선방안 추진 : '05.7~12